

(재)김해시복지재단 임원(비상임 이사) 공개모집 공고

(재)김해시복지재단에서는 “소통과 통합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전문기관” 구현을 위해 다양한 업무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선임직 임원(비상임이사)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.

2023년 4월 25일

(재)김해시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



1 임용직위 및 모집인원

직종	직위	선발인원	주요역할
선임직	비상임 이사	3명	재단 주요 경영정책 심의·의결

2 임용계약 및 보수

- 가. 임용형태: 선임직/ 비상임 이사
나. 임용기간: 임명일로부터 3년(* 연임 가능)
다. 보수: 무보수(회의 참석수당 실비 지급)
라. 임용예정일: 2023년 6월 중(예정)

* 임용일자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3 응시자격 요건

- 가. 일반 자격요건
- 응시연령: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사람
 - 성별/학력/병역: 제한없음
 - 지역제한: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일 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로 되어있으며,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.

- 4) 기타제한(공통): 「김해시복지재단 정관」 제1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

「김해시복지재단 정관」 제16조(임원의 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5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취업제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람
8.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동 법 제71조에 의해 처벌받은 사람

나. 자격요건

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

- ① 복지 분야와 관련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
- ② 복지에 대한 이해와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

* 근무경력, 학위소지, 자격, 면허에 대하여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.

4 지원서 접수

가. 공고 및 접수기간: 2023. 4. 25.(화) ~ 5. 2.(화) / 18:00까지

나. 접수방법

1) 이메일 접수(moss@ghwf.or.kr)

* 이메일 접수자는 구비서류 작성 후 스캔하여 제출(첨부제출)하여 주시기 바라며, 메일 발송 후 메일도착 여부를 경영지원팀(055-310-8586)으로 반드시 접수확인 연락을 바랍니다>(* 미확인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.)

2) 등기우편(접수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
3) 방문접수: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(09:00~18:00) 접수 / 국·공휴일 제외

- 주소(접수처): (50811) 경상남도 김해시 신어산길 46(삼방동), 김해시복지재단 경영지원팀

다. 제출서류

1) 지원서(서식) 1부.

2) 자기소개서(서식) 1부.

- A4용지 2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

3) 최종학력증명서 1부.

4) 경력증명서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) 각 1부.

5) 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 각 1부.

6) 주민등록 등·초본(병력사항 포함) 각 1부.

7) 기본증명서 1부(상세) 1부.

8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/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체크리스트(서식) 각 1부.

9) 지원서의 관련 분야 논문발표 등 업적과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
10)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포상실적 증명 서류(상장 사본 등), 논문·저서의 경우 요약서 등의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
【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】

- 응시원서 작성시 교육, 자격, 경력사항은 증빙 가능한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고, 특히 경력사항의 경우 사전에 경력/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경력기간, 담당업무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(공증 필)을 반드시 첨부.

5 선발방법 및 임용예정자 발표

가. 심사방법 및 내용

- 1) 심사일시: 2023. 5. 4.(목) 예정
 - 2) 심사기준: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항목 별 심사
 - 3) 심사방법: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, 위원 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
 - 4) 선발인원: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및 추천
- 나. 임용예정자 발표: 개별통보 및 재단 홈페이지 게시

6 기 타 사 항

- 가.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, 임용권자가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및 신원조사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나. 지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동의서는 (재)김해시복지재단 홈페이지(www.ghwf.or.kr)에서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, 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다. 접수결과 임용예정 직위의 2배수 미만으로 접수될 경우 재공고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존 지원자의 경우 추가로 지원서 제출 없이 기 제출된 서류로 심사하게 됩니다.
- 라. 재공고 접수결과 응시자가 모집 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시한 사람 중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후보로 추천 할 수 있습니다.
- 마.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)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반환하며, 반환 청구기간은 응시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까지이며, 반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됩니다.
- 바.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서류심사 7일 전까지 (재)김해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합니다.
- 사. 기타 문의사항은 (재)김해시복지재단 경영지원팀(☎055-310-858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7 불입문서

- 가. 직무수행요건 1부.
- 나. 지원서 1부.
- 다. 자기소개서 1부.
- 라. 개인정보동의서 1부.
- 마.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.
- 바. 채용서류반환청구서(필요 시 제출) 1부.

【직무수행요건】

□ 직위명 : 비상임이사

1. 담당 직무

가. 법령·정관상의 담당직무

나.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재단의 주요 경영정책을 심의·의결

2. 직무수행요건

가. 자격요건(법령·정관상 요건)

○ 「(재)김해시복지재단 정관」 제16조(임원의 결격사유)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

○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요건

-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자

나. 기타 수행 능력요건

필요한 주요 능력	요구되는 능력 수준	비고
① 리더십	상당히 요구	
② 전문성	크게 요구	
③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	크게 요구	
④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	상당히 요구	
⑤ 청렴도	크게 요구	
⑥ 도덕성	크게 요구	
⑦ 준법성	상당히 요구	

○ 학력 및 전공분야 : 제한 없음

○ 자격요건

- 복지 분야와 관련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

- 복지에 대한 이해와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

지 원 서

공모 직위명	
--------	--

사진부착 (3.5cm×4.5cm) 최근 6개월 이내	인 적 사 항	성 명	[한글]				[한자]			
		주 민 번호	-							
		주 소								
		전 화	[주택]() -		휴대폰		E-mail		[직장]() -	

	기 간	학 교 명	전 공	소재지	학 위
학 력 사 항	년 월 ~ 년 월	고등학교			
	년 월 ~ 년 월	대학교			
	년 월 ~ 년 월	대학원	세부전공:		
	년 월 ~ 년 월	대학원	세부전공:		
	최종학위 논문주제				

병역 사항	병 역	필, 병역특례, 면제(면제시 사유 :)				
	군 별		계급		복무 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(년 개월)

	종 류	취득년월일	어 학	외국어명	점수	검정기관	
자 격 및 면 허							

	근 무 처	근무 부서	직 위	담당업무	근무기간	퇴사사유
경 력 사 항					~	
					~	
					~	
					~	
					~	

① 관련분야 논문발표 등 업적 (중요도 순 작성)

구분	제목	게재년월	게재기관
논문			
기타			

※ 주요업적을 기술하되,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(이하 동일)

②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(중요도 순 작성)

과제명	주요내용	연구기간	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	역할 (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)

③ 연구기술, 포상실적 등 기타 업적

④ 관련분야 특허·사업화 성공 등 국가발전 기여 업적

⑤ 국제화 활동 사항(국제적인 공동과제 관리, 국제전문위원회 참여 등)

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지원자 :

(서명)

자 기 소 개 서

공모 직위명	
성 명	

※ 지원동기 등 A4용지 2매 이내로 기술하여 주십시오

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

(재)김해시복지재단에서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에 의거하여 직원 채용 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사오니 정보의 수집·활용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

(1)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

수집항목	수집 및 이용 목적	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성명, 사진, 주민번호, 주소, 학력, 병역사항 등	응시자 본인 확인	「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 종료후 180일까지
전화번호/ 전자우편주소	합격통지 및 안내 등에 활용	
응시원서, 경력·경험사항, 자격·면허 소지사항, 논문, 연구과제, 포상실적 등 증빙서류	채용절차 진행 전반에 활용	

*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, 개인정보를 수집,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?

동의함

동의안함

(2)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(* 최종합격자 선정절차에 한해 취급)

* 고유식별정보 :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

수집항목	수집 및 이용 목적	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주민등록번호	▶ 채용과정 내 자격·면허·경력 등 조회 확인 ▶ 신원조사·신원조회 등 조회 기초자료 확보	「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 종료후 180일까지
각종 자격번호		
등록기준지		

*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, 고유식별번호를 수집,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?

동의함

동의안함

(3)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(* 최종합격자 선정절차에 한해 취급)

제공처	제공목적	제공항목	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경찰청, 검찰청	범죄경력(결격사유) 조회	주민등록번호	「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 종료후 180일까지
감사원, 행정안전부, 지방자치단체	감사 및 징계전력 자료	주민등록번호, 주소, 등록기준지	

*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?

동의함

동의안함

년 월 일 성명 : 서명 또는 (인)

(재)김해시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귀하

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)」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사전 확인 (해당 항목에 v 표시)	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되며, 면접자료 등으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.	
1.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습니까?	있다 없다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
※ 공직자 :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제2조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	
2. 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'로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까?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함)	있다 없다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
※ 부패행위 :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제2조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※ 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☞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 ☞ 부패행위 해당	
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습니까?	있다 없다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
3-2. 현재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까?	해당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
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	있다 없다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까?	해당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
4-3.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(법률 제14145호) 시행(2016.9.30.) 이후 퇴직자입니까?	해당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

1, 2, 3-1, 3-2 항목 모두 충족 ☞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제82조제1항제1호에 의거한 취업제한대상자
 1, 2, 4-1, 4-2, 4-3 항목 모두 충족 ☞ 동법 제82조제1항제2호, 부칙<법률 제14145호> 제2조에 의거한 취업제한대상자

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(필요시 제출)

접수번호	접수일자	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(재)김해시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귀하

공 지 사 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